

일 방식 혁신을 통한 체납정리 (대포차정리, 이미지관리, 송달자료관리)

- 전라남도 여수시 세무회계과 -

I. 서론

조세는 공평한 과세를 바탕으로 공평한 징수가 되어야 하고 체납액 징수는 재원확보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체납자들의 체납유형이나 수법이 다양화, 고질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징수방법도 다양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시는 가상계좌 및 ARS 납부안내시스템,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도입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징수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이 <표 1> 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5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은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만 추가로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되므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에, 우리 시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있는 체납액 정리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표 1〉 여주시 연도별 징수율 및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징수율	90.8%	89.7%	90.8%	91.3%	92.3%
체납액	13,081	14,829	15,448	15,255	14,491

II.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동시 추진사례

1. 추진배경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면 차량을 무단방치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이 지난 후 공매추진을 위해 차량의 소재를 찾으려 해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체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포차’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이에, 고질체납 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차량에 봉표(국세징수법 서식 제27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 적색)를 부착하고, 인도명령서와 공매예고 안내문을 차량소유자에게 교부 또는 통지하는 시책임.

2. 현황 및 실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차량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불법 차량의 경우 차량 운행할 수 없도록 바퀴를 결박하기도 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규에 결박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거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기간은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을 시세 부과징수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도 약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납부하지도 않고, 번호판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이 누적되고 있으나 행정적 대응이 미흡하였고, 이는 ‘대포차’로써 큰 사회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표 2〉 여주시 영치번호판 미 반환 건수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2이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542	661	217	276	31	125	26	22	114	88	83	96	71	54

3. 혁신 추진내용 및 방법

사례 1 인도명령서 발부를 통한 체납액 징수사례

체납액 11건, 1,370천원이 체납된 김○○씨 소유 2005년식 렉스턴 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봉표’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한 후 ‘인도명령서’와 ‘공매예고 안내문’을 차량의 와이퍼에 꽂아둠. 체납자가 다음날 세무과로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며 분납을 요청하였으나, 체납처분 중지는 납세의무가 소멸되어야 하고, 납세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가능함을 설명하고, 체납자 분납 요구를 거절하자 자동차세를 포함한 주민세 등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감.

사례 2 대포차 신속한 공매처분 사례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액 10건, 1,376천원이 체납된 ○○○부도법인 소유의 1999년식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 후, ‘봉표’ 부착과 동시에 ‘인도명령서’ 및 ‘공매예고 안내문’을 차량 와이퍼에 꽂아둠. 체납자나 차량 점유자로부터 연락이 없어 3일후 영치장소를 재방문한 결과, 영치증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차량상태, 보관물품 등에 대한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공매추진을 위해 차량을 견인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액 정리.

사례 3 차량 공매시 근저당권 압류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동시 징수사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카드(주)의 직원으로부터 차량 공매 요청이 있어 차량 소유자 최○○씨의 체납 조회결과 1건, 43천원에 불과하여 공매 요청을 거절하려 하였으나, 권리분석 과정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근저당액 5,153천원) 오○○씨가 23건, 2,556천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

이에, 차량 소유자인 최○○씨에게 공매와 관련하여 상담 결과, 개인 채무가 많아 차량 유지가 불가능하고 각종 압류 설정으로 인해 매도가 불가능하므로 공매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2002년식 프레지오 차량에 대해 공매를 추진하게 됨.

근저당권자인 체납자 오○○씨의 경우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가 여러 건 있음을 확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조사한 결과, 책임보험과태료 등 1,833천원의 체납이 확인되어 관련부서에 근저당권 압류를 요청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프레지오 차량은 7,451천원에 낙찰되었고, 지방세 2,556천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833천원 전액을 동시에 징수하였음.

4. 추진성과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만 영치할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12) 그러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과 동시에 ‘봉표’를 붙이고 ‘인도명령’을 한 것은 이미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 하겠다는 체납처분 행정행위이므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차량에 압류된 체납액 전액을 동시에 징수할 수 있음.

☞ 추진실적 : 봉표부착 - 31대 30,256천원, 현금징수 - 9대 7,357천원,
공매징수 - 5대 6,025천원, 공매진행 - 17대 16,874천원.

또한, ‘봉표’를 훼손하면 형사고발 한다는 ‘안내문’을 교부함으로써 체납자에게 경각심과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체납액 징수가 쉬워지고 있다. 향후 ‘대포차’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도 체납차량에 대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바퀴를 결박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5. 기대효과

- 기존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 등록번호판 영치 ⇒ 번호판 찾아가지 않음, 무단방치 ⇒ 차량 소재 불명으로 공매불가 ⇒ 체납액 누증
- 개선 :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봉표 부착 ⇒ 인도명령서, 공매예고 안내문 교부 ⇒ 체납액 미납부시 공매추진
- ☞ 효과 : 고질체납차량 신속한 공매추진 가능, 체납액 증가로 인한 행정·재정 손실 방지, 자동차세 이외의 세목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능

Ⅲ. 이미지 관리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사례

1. 추진배경

법원 경매서류를 접수와 동시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이미지 파일로 등록한 후, 세무담당자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공유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 서류분실 등에 따른 교부청구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책을 도입하였음.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각종 지방세 자료를 이미지 관리하여 입증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2. 현황 및 실태

세무행정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아직도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세정에 대한 불신으로 세무부서를 찾아와 자주 토로하는 요인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행정을 해야지 자리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이야기함.

또한, 세정에 대한 불신으로 민원인이 입증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종이문서를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음.

3. 혁신 추진내용 및 방법

우리 시에서는 2005년부터 법원 경매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는 시책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모든 세목과 관련된 신고서류, 비과세·감면자료, 영수필통지서, 체납액 징수관련 증빙서류 등 2,560,700건을 이미지로 관리하고 있음.

특히, 2005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도입과 지방세제 개편으로 민원이 폭주하였다. 이에 2006년부터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주택을 조사하면서 42,000호 단독주택 전체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주택 사진을 현재 여수시 인트라넷지리정보시스템에 각 지번별로 연계시켜 정보이용자가 해당 주택의 위치와 현황 사진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지번을 검색하면 ‘주택사진’과 함

께 ‘지적도’,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주택과 토지관련 모든 정보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시, 현장사진을 보여주면서 토지 이용현황, 건물 구조와 용도 등을 쉽게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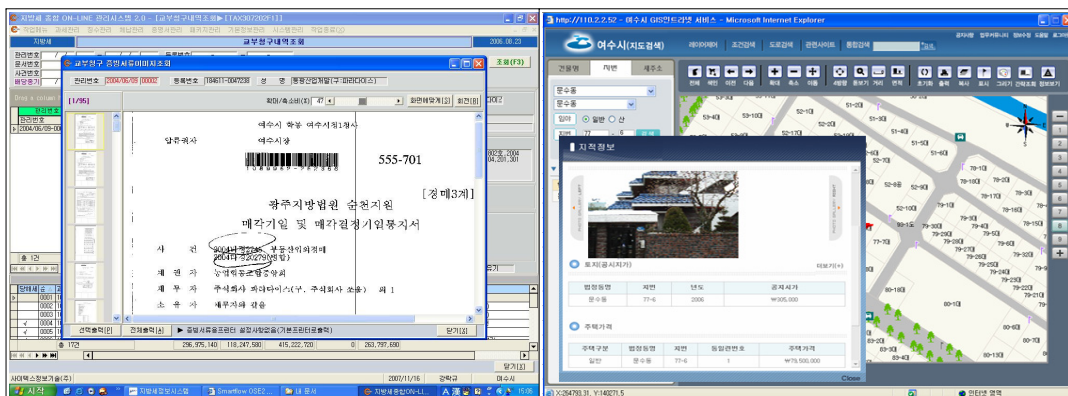
4. 추진성과

모든 세목과 관련된 신고서류, 비과세·감면자료, 영수필통지서, 체납액 징수관련 증빙서류를 전산 이미지로 입력하여 보관할 경우, 길게는 10년이 지나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납세자들의 세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는 자료로 활용됨.

지방세관련 증빙자료의 전산화로 체납액 징수담당자들이 수시로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징수대책 수립이 가능하였고, 장기적으로 서류 검색 및 보관에 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음.

또한, 개별주택 현장사진은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한 사전 조사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믿음을 주어 체납액을 줄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예컨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 925건, 2006년 219건, 2007년 177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에 재산세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민원도 크게 감소하였음.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이미지입력 프로그램이 없어 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과제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이미지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하고, 개발 완료시 스캐너 장비(대당 100만원정도)만 갖추면 타 지자체에서도 즉시 도입이 가능하므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봄.



5. 기대효과

- 각종 증빙서류 : 스캐너를 이용 이미지 파일로 스캔 ⇒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 수시 열람을 통해 징수업무에 활용
- 개별주택가격 : 주택가격 현장조사 사진촬영 ⇒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 ⇒ 수시 열람을 통해 부과징수업무에 활용
- ☞ 효과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성 제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시책추진 가능

IV. 등기우편물 우체국 송달자료와 지방세 전산 연계사례

1. 추진배경

지방세가 체납되면 채권확보를 위해 먼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첫 단계인 압류는 공매를 비롯한 각종 체납처분의 선행절차로 압류처분의 위법성은 후행처분에 승계되어 위법한 압류의 경우 후행 공매처분도 위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와 마찬가지로 압류의 선행처분인 납세의 고지, 독촉절차를 위법한 경우 압류 역시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또한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다. 서류송달의 중요성 때문에 법원의 특별송달 우편물은 정보통신부와 계약에 의해 온라인 실시간 조회가 가능함. 따라서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서 송달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바, 우리 시에서 우체국 등기우편물 송달자료를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자관리카드’에 일괄 등록하는 시책 추진.

2. 현황 및 실태

기존 수기 방식의 등기우편 송달부 관리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고지서 송달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고지서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번호를 부여 받아 다시 송달부에 등기번호를 기재하거나, 등기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그대로 종이문서로 보관함.

고지서가 송달되면 우체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현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령관련 정보를 한 건씩 조회 후 출력하여 보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 사실상 배달정보 확인이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납기가 경과된 후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 등 체납처분이 필요한 체납자에 한하여 고지서 배달정보를 문서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등기우편물 배달자료의 우체국 보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지서 송달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배달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발송한 근거는 있지만 누가 수령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음.

세무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때는 개인별 체납자관리카드를 지참하게 된다. 체납자관리카드에는 과세내역, 압류내역, 독려내역 등 체납자의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나, 독촉장 등 송달내역이 입력되지 않아 체납정리에 불편한 점이 많음.

3. 혁신 추진내용 및 방법

우리 시에서는 등기우편물 전체에 대한 송달결과를 우체국에서 전산파일로 제공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별 체납자관리카드 독려사항에 배달정보를 일괄 등록하고 있음.

등기우편물 발송시 송달부와 납세고지서 순서를 일치시키고, 똑같은 순서로 등기번호를 부여받아(우체국 전산에도 같은 순서로 입력됨), 고지서 배달정보가 입력되면 그 자료를 전산파일로 저장하여 제공받게 된다. 제공받은 우체국 파일과 고지서 송달부 파일을 연계하여 등기번호와 송달정보를 일치시킨 후,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자관리카드에 개인별 배달정보를 일괄 등록함.

4. 추진성과

등기우편물 배달정보를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관리가 가능하고, 등기우편물을 수기로 조회하여 출력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절약된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연간 약 4만여 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바, 불필요한 문서생산 감축으로 인한 예산 절감.

무엇보다도 납세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부독려 시 납세자와 고지서 송달관계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믿음을 주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 표준지방세정

보시시스템의 체납자관리카드에 우체국 배달정보를 연계하는데 일정부분 수작업이 필요하므로, 지방세체납자관리카드에 일괄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실시간 등기배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5. 기대효과

- 기존 : 고지서와 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 ⇒ 등기번호 부여받아 송달부에 기재 또는 영수증만 보관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배달결과를 조회 후 1건에 1매씩 출력 보관
- 개선 : 고지서와 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 ⇒ 우체국 배달결과를 전산 파일로 수령 ⇒ 우체국 파일과 송달부 파일을 연계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체납자관리카드에 개인별 배달정보 일괄등록

☞ 효과 : 현장에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입증자료 제시로 징수율 제고, 종이문서 생산 감축으로 시간과 예산 절감, 자료구축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성 뛰어남.

V.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시스템 도입 소개보다는 ‘체납액 정리 기법 먼’에서의 추진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제는 행정도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세정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것부터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세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경우, 국민들이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것이다.

고의적으로 탈세를 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적이다.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담보대출을 받지만, 은행에서는 체납액만 확인하고 대출 이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부 납세자는 고의적으로 세금체납과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과세권자와 금융기관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취득세를 포함한 조세채권에 대해 납세자에게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과세권자와 금융기관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되며, 우선 각 자치단체의 금고부터 요구하고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금융연합회 등 금융기관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